# 3책5공(과제수 제한기준) 운영방안

## □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의 3책5공 관련 규정

#### 제32조(연구수행에의 전념)

-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1.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- 2. 사전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
- 3.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- 4.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(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)
- 5.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
- \* 굵은 글씨(bold)는 금번 개정을 통해 추가된 사항

# □ 3책5공 기준 적용 운영 방향(안)

- 세부과제 단위까지 과제수를 산정(협약서에 포함된 세부과제로 한정, 위탁과제는 산정 제외)
- 세부과제가 2개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과제에서 **세부과제 책임자**도 **책임자로서 과제를 1개 수행**하는 것으로 산정
  - **총괄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동시에 수행**하는 경우 세부 과제 **책임자로서 1개 수행**으로 산정(총괄과제 책임은 산정 제외)
  - ※ 이 경우 총괄과제는 제32조 제2항 제3호(세부과제의 조정·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)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제수 산정에서 제외
  - **총괄책임자**가 세부과제 책임을 맡지 않으면서 세부과제와 **별도의**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책임자로서 1개 수행으로 산정

### □ 3책5공 기준 적용 제외 운영 방향

- ①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연구과제
- (적용원칙)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(해당 연구자만 적용, 해당 중소기업은 적용제외)
  -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등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
  - 중소기업이 실제 연구는 수행하지 않고, 연구결과를 사업화할 목적으로 매칭투자만 한 경우에도 적용
- (금액기준) 1억원이하 과제에 대해 3책5공기준 적용 제외
- 🔷 적용사례 : 음영(🔲) 부분(①, ②, ⑨ 과제)의 교수만 적용
  - ※ 단, ① 과제는 총괄책임자가 세부과제의 책임을 맡지 않으면서 세부과제와 별도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만 적용
- o (유형1) 단독과제 안에 비영리법인 연구자와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

① 책임: **교수** 참여: 중소기업 ② 책임: 중소기업 참여: **교수** 

ㅇ (유형2) 총괄책임자가 중소기업, 비영리법인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

③ 총괄(책임: 중소기업)

④ 세부1(책임: 중소기업)

⑤ 세부2(책임: 교수)

o (유형3) 총괄책임자가 비영리법인, 중소기업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

⑥ 총괄(책임: 교수)

세부1(책임: 중소기업)

⑦ 세부2(책임: 교수)

ㅇ (유형4) 총괄책임자가 비영리법인, 특정 세부과제에 중소기업이 참여

⑧ 총괄(책임: 교수)

⑨ 세부1 (책임: 교수, 참여: 중소기업)

⑩ 세부2(책임: 교수)

o (유형5) 총괄과제에 중소기업이 참여기업으로 참여

③ 총괄(책임: 교수, 참여; 중소기업)

⑫ 세부1(책임: 교수)

⑬ 세부2(책임: 교수)

### ② 소액과제

- (적용원칙)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단독과제에 한하여 적용
- (금액기준) 5천만원이하 과제에 대하여 3책5공 기준 적용 제외
  - \* 다년도 협약과제는 해당연도 연구비를 기준으로 적용

# □ 적용시기 및 범위

○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규정 시행일(7.1) 이후 **새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**